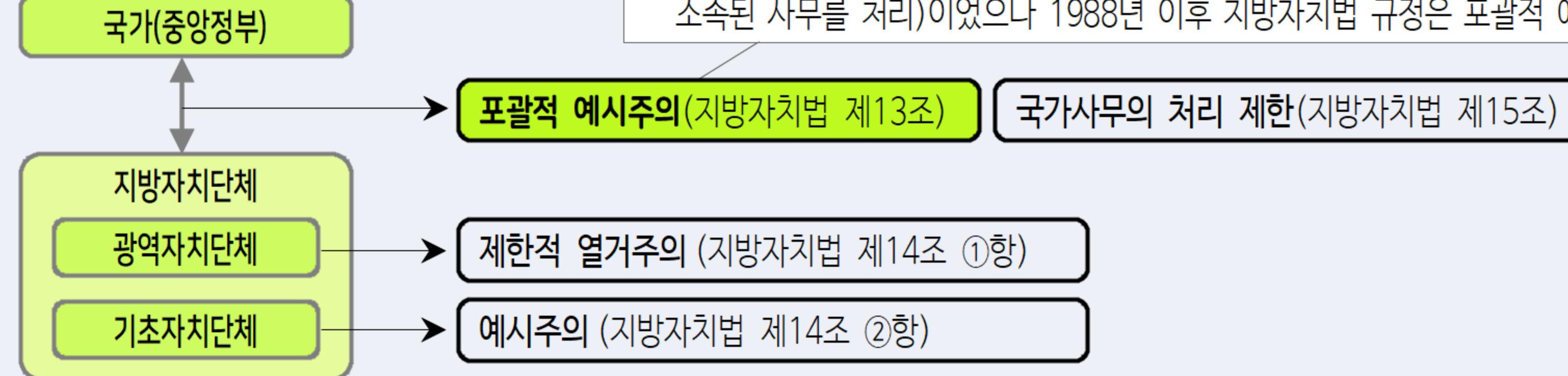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 ② 관할지역의 경찰사무 중 생활안전·경비에 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고, 교통·수사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된다.
- ③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범위 안에 있다.
- ④ 지역의 화재예방·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안에 있다.

해설

- ① (O)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상 사무배분방식



■ 1988년 이전 지방자치법 규정은 포괄적 수권방식(그 지방의 공공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단체에게 소속된 사무를 처리)이었으나 1988년 이후 지방자치법 규정은 포괄적 예시주의 방식으로 전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서조항으로 인해 예시주의 취지가 약화됨

- ② (X) 지역 내 교통활동 사무와 수사사무 일부(지역밀착형 수사업무)는 자치경찰 사무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④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⑤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단,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 ⑥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⑦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⑧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설치·관리, ⑨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⑩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⑪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⑫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수사사무 일부(지역밀착형 수사업무): ⑬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⑭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⑮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⑯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⑰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⑱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 ③ (O)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

- ④ (O)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6호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나목에서는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

▣ 지방자치법 제13조 ②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예시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각 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	①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②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③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④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⑤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⑥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⑦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⑧ 행정정보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기반	⑨ 공유재산관리 ⑩ 주민등록 관리 ⑪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통계의 작성
		①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②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③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④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⑥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⑦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⑧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⑨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⑩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① 농·축·수산·상공업 등 농업용수시설 설치·관리 ②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유통 지원 ③ 농업자재의 관리 ④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⑤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⑥ 농가 부업의 장려 ⑦ 공유림 관리 ⑧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⑨ 가축전염병 예방 ⑩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⑪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⑫ 중소기업의 육성 ⑬ 지역특화산업 개발과 육성·지원 ⑭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면예품 개발

2021년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4	지역개발과 자연 환경보전 및 생활 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① 지역개발사업 ②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③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④ 지방도(地方道)·시도·군도·구도 신설·개수·유지 ⑤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⑥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⑦ 자연보호활동	⑧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⑨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⑩ 소규모수사설의 설치 및 관리 ⑪ 도립공원·광역시립공원·시립공원·군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⑫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향토양식의 설치 및 관리	⑬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 ⑭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⑮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관리 ⑯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 예술의 진흥	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②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③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④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⑤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 방소방	①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 포함)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②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①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②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답 ②

2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세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등록면허세 ② 담배소비세 ③ 레저세 ④ 자동차세

해설

자치구세에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있음.

▣ 과세주체별 지방세의 종류

과세주체		보통세(9개)	목적세(2개)	
광역자치단체장	특별시세·광역시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주1)} ,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2)} 추득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도세	등록면허세		
기초자치단체장	시·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3)}	X
	자치구세	등록면허세		

* 주1) 광역시의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주민세 개인분만 광역시세.

* 주2)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21% x)를 재원으로 함. 시·군·자치구에 납입·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은 시·군·자치구세로 함.

* 주3) 특별시의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재산세의 도시지역분을 특별시세로 함. 주택·건축물·토지 재산세는 특별시와 공동과세.

*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도세 항목을 광역시세로 함(예 등록면허세).

답 ①

3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952년 최초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② 1999년 주민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 주민감사 청구권이 신설되어, 2000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③ 1994년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제가 도입되었고, 2004년 「주민투표법」이 별도 입법으로 제정되었다.
 ④ 201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7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해설

① (○) • 지방선거 연혁

시기	1공화국		2공화국	6공화국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이후		
지방선거	1차(1952)	2차(1956)	3차(1960)	4차(1991)	5차(1995)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차(1998)~11차(2018) 2~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의회	1대 지방의원(시·읍·면) 직선	2대 지방의원 직선	3대 지방의원 직선	4대 지방의원 직선	5대 지방의원 직선	
지방자치 단체장	특별시장·도지사는 대통령 임명, 시·읍·면장은 의회 간선	직선(시·읍·면장)	직선(서울특별시장·도지사·시·읍·면장)	자치단체장 선거 미 실시	직선(특별시장·광역시장·시·군수·구청장)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4년마다 직선

②③ (○) •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구분	시행연도	근거 법률	비고
주민감사청구	2000년	지방자치법	1999년. 지방자치법에 규정
주민조례발안	2000년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1999년. 지방자치법에 규정(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개폐를 청구하는 간접발안 방식)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발안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022년 시행
주민투표	2004년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에는 1994년 규정(법률로 정하도록 함). 주민투표법 2004년 제정
주민소송	2006년	지방자치법	2005.1. 지방자치법에 규정.
주민참여예산	2006년	지방재정법	2006년 자율시행, 2011년 의무화. 2019년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까지 확대
주민소환	2007년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에는 2006년 규정(법률로 정하도록 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2006년 제정

(4) (x)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법에 2006년 규정(법률로 정하도록 함). 2006.5.2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5.11. 시행됨.

답 ④

2

2021년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4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 중 단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층제는 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협력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 ② 단층제는 중층제에 비해 어느 하나의 계층에서 유지되는 행정기구와 인력을 절감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 ③ 단층제는 광역적 행정수요 대응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 ④ 단층제는 관할구역과 기능배분상의 중첩이 없으므로 해당 구역 및 기능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의 책임성을 명확히 할 수 있다.

해설

- ① (x) 수직적 \Leftrightarrow 수평적(단층제는 상급·하급 자치단체의 구별이 없으므로 자치단체 간 수직적 관계가 없음)
단층제는 모든 자치단체가 수평적 대등관계에서 상호 간 경쟁·협력·분담관계를 활성화한다.

▣ 단층제와 중층제(다층제) - 중간자치단체의 존재 여부 기준

구분	단층제(single - tier system)	중층제·다층제(multi - tier system) * 2층제
의의	하나의 구역 안에 단일의 자치단체만 존재. 국가와 자치단체 사이에 중간자치단체가 없음. 지방행정의 종합화를 추구하며 주민자치 전통이 강한 영국에서 유래	하나의 구역 안에 여러 자치단체가 중첩된 구조(하나의 일반자치단체를 포함). 국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중간[광역]자치단체가 있음.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행정계층 수가 적어 이중행정이나 이중감독의 폐단을 방지, 경유기관을 줄여 행정의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행정, 거래비용·의사전달비용 감소 ② 행정책임의 명확화(단독의 지방정부가 주민생활행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게 됨) ③ 다층제보다 자치단체의 자치권, 지역의 특수성·개별성 존중 ④ 중앙정부와 주민 간 의사소통이 다층제보다 원활, 주민의 의사 누수 방지 ⑤ 모든 자치단체가 수평적 대등관계에서 상호 간 경쟁·협력·분담관계를 활성화 ⑥ 중간단계가 없으므로 '작은 정부' 차원에서 볼 때 규모의 축소가 구현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방정부 간 수직적 분업체계, 행정기능의 적정관리규모에 맞도록 행정구역을 구획하여 전문성·효율성 제고(광역 : 전략적 기능, 기초 : 전술적 기능) ② 중간자치단체가 보완, 대행, 감독, 광역행정기능 수행(기초자치단체의 능력 부족을 보완, 기초자치단체간 갈등의 사전 조정, 여러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광역적 사무 수행) ③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대규모 국가에 적합 ④ 국가와 자치단체 간 원활한 관계 유지, 중앙의 직접통치가 광역자치단체의 감독으로 대체되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감독·간섭으로부터 기초자치단체를 보호, 광역자치단체를 통한 국가의 감독기능은 유지됨. ⑤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이 작아 주민의 접근성 증대, 주민참여 용이, 행정수요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성 민감성 향상 ⑥ 지방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반영(혈연·지연적 공동체는 기초자치단체, 중앙정부 수립 후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해 통치권을 행사한 것은 광역자치단체)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광역적 행정·개발사무처리에 부적합 ② 자치단체 간 갈등이 중앙의 이슈로 될 가능성이 많고 사전조정 곤란 ③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대규모 국가에 부적합(중앙정부의 통솔범위가 넓어져 다수의 지방정부 통제·조정 곤란) ④ 중앙집권화와 중앙정부의 비대화 우려(광역자치단체라는 여과장치가 없어 자치단체의 능력을 초월하는 사무는 중앙정부가 직접 처리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항할 힘과 능력을 갖추지 못해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음) ⑤ 계층 수 축소는 구역의 크기를 확대시켜 다층제보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저하, 주민참여 곤란^{주1)}, 행정수요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성·민감성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중감독, 이중행정의 폐단으로 인한 비능률, 경유기관 증대로 인한 행정지연과 거래비용·의사전달비용 증대 ② 중간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책임의 불명확성(책임의 전가, 행정책임의 사각지대 발생) ③ 지역별 특수성·개별성 경시(기초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구역 내 모든 행정기능을 광역자치단체가 획일적으로 처리),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침해 ④ 국가와 주민 간 상향적 의사전달과 하향적 행정침투의 왜곡·저해 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 경쟁·협력관계에 대해 간섭·통제하므로 자치단체의 외교적 역량의 성장을 방해

답 ①

5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은 별정직공무원이다.
- ② 서울시립대의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이다.
- ③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시·도에만 설치되어 있다.
- ④ 중앙정부 경비로 운영되는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더라도 신분은 지방공무원이다.

해설

- ① (x) 선출직으로서 정무직 지방공무원
② (x) 공립(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 서울시립대는 공립 종합대학.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2021년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③ (○) **지방공무원법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임용권자(시·도의회의 의장 및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한다)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답 ③

6

정부 간 재정 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 간 재정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배분 시스템만을 의미한다.
②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조건부 지원금으로 중앙정부 입장에서 특정 공공재를 공급하고자 할 때 유리한 측면이 있다.
③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며, 이 중 용도가 지정된 것은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이다.
④ 정부 간 재정 조정제도는 지역 간의 재정 격차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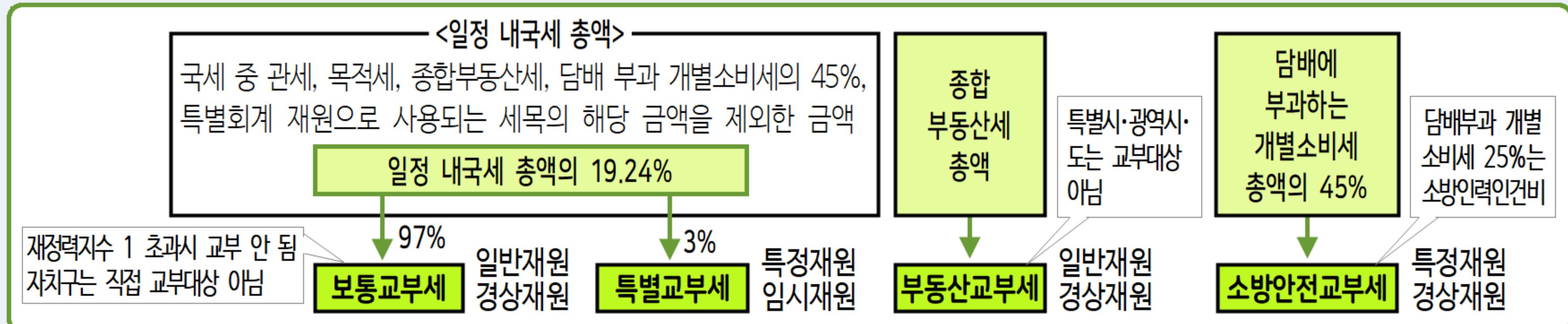
- ① (×) 지방정부 간 재정 배분 시스템도 포함됨.

② (○) • 국고보조금의 특징

- 국가는 정책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충당하도록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하는 자금.
① **특정재원** :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이므로 국가의 감독·통제가 많아 지방통제수단의 성격이 강함.
② **경상재원** : 매년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경상재원(국가의 재정형편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으므로 반대 의견도 있음).
③ **의존재원** : 국가가 교부, 법정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하며 국가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
④ **무상재원** : 대가로서 반대급부가 수반되지 않는 일방적 급부금.
⑤ **지방비 부담(주로 대응지원금)** : 대부분 정률보조로서 지방비 부담을 비례적으로 요구(대응지원금)

- ③ (×)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인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

• 지방교부세 종류와 재원



- ④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 : 재정불균형의 조정(지역간 재정격차 완화)

수직적 불균형의 조정	국가나 상급자치단체와 하급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조정	예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
수평적 불균형의 조정	동일한 계층에 속하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조정	예 지방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

답 ②

7

오츠(Oates)의 분권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① 오츠의 이론을 따를 경우 지방정부의 규모는 작을수록 효율적이다.
② 오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③ 오츠의 이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 배분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과 맥을 같이한다.
④ 오츠의 이론에 따르면, 특정 공공재 소비의 수혜 범위가 지리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면 상위 정부의 공급이 바람직할 수 있다.

① ①, ②

② ③, ④

③ ①, ②, ④

④ ①, ②, ③, ④

4

2021년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 ① (x) 지방정부의 규모는 작을수록 효율적이라고 봄 -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지방공공재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임.
- ⑤ (o) 경제학적 견지(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의 일치, 자원배분의 효율성, 파레토최적, 사회후생 극대화)에서 지방분권의 이점을 설명.
- ⑥ (o) 특정 공공재의 소비가 지리적으로 전체인구 중의 일부 주민에만 한정되고 각 구역(jurisdictions)에서 소비될 공공재의 공급비용이 중앙정부와 해당 지방정부에서 동일하다면, 중앙정부가 모든 구역에 걸쳐서 획일적으로 정해진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보다 지방정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해당 지역에서 파레토 효율적인 수준의 산출물을 공급하는 것이 언제나 더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중앙정부만큼 효율적이라는 이론. 따라서 지방정부에 대한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칙(상급정부는 하급정부가 공급하기 곤란한 사무를 담당)과 맥을 같이 함.
- ⑦ (o) 오츠는 특정 공공재 소비의 수혜 범위가 지리적으로 한정되어 외부효과가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 의한 지방공공재 공급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역으로 보면 특정 공공재 소비의 수혜 범위가 지리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면 상위 정부의 공급이 더 바람직(더 효율적)할 수 있다.

답 ④

▣ 오츠(W. Oates)의 분권화 정리(Oates's Decentralization Theorem)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공공재의 소비가 지리적으로 전체인구 중의 일부 주민에만 한정되고 각 구역(jurisdictions)에서 소비될 공공재의 공급비용이 중앙정부와 해당 지방정부에서 동일하다면, 중앙정부가 모든 구역에 걸쳐서 획일적으로 정해진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보다 지방정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해당 지역에서 파레토 효율적인 수준의 산출물을 공급하는 것이 언제나 더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중앙정부만큼 효율적이라는 이론. • 경제학적 견지에서 지방분권의 이점을 설명. 지방정부에 대한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칙과 맥을 같이 함. 														
전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공공재 생산비용은 일정(규모의 경제 없음) ② 공공재의 지역 간 외부효과 없음 ③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과 수요에 대한 정보(주민의 선호)를 가짐. 중앙정부는 이러한 정보가 없음(정보의 비대칭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앙정부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므로 공공재를 획일적으로 공급하므로 지방의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welfare loss)가 발생함. ②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대한 정보(주민의 선호)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공공재를 공급함에 있어서는 과잉·과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의 규모는 작을수록 효율적임. ∵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 - 만약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양의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 중앙정부가 생산하여 지방정부로 배분하는데 따른 추가비용 발생)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60%;"> <p>The graph illustrates the efficiency of public good provision by two levels of government. The vertical axis represents price/cost, and the horizontal axis represents the scale of local public goods supply. A horizontal line labeled MRT represents the marginal cost of production. Three downward-sloping curves represent the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MRS) for three regions: ΣMRS^A (blue), ΣMRS^B (red), and ΣMRS^C (yellow). Point a on ΣMRS^A corresponds to supply level Q_A. Point b on ΣMRS^B corresponds to supply level Q_B. Point c on ΣMRS^C corresponds to supply level Q_C. Point d is on the MRT line at supply level Q_C, and point e is on the MRT line at supply level Q_B. The area between the MRT line and the ΣMRS^A curve from Q_A to Q_C is shaded green (α). The area between the MRT line and the ΣMRS^B curve from Q_B to Q_C is shaded yellow (β).</p> </div> <div style="width: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재 공급의 한계비용 일정($MRT=D$) • ΣMRS^A : A 지역 한계편익 • ΣMRS^B : B 지역 한계편익 • ΣMRS^C : 두 지역 한계편익의 평균 </div> </div>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공급주체 효율성</th> <th colspan="2">지방정부가 공급시</th> <th rowspan="2">중앙정부가 공급시</th> </tr> <tr> <th>A 지역</th> <th>B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공급수준</td> <td>$MRT = \Sigma MRS_A$ Q_A 수준 공급</td> <td>$MRT = \Sigma MRS_B$ Q_B 수준 공급</td> <td>$MRT = \Sigma MRS_C$ 두 지역 모두 Q_C 수준 공급</td> </tr> <tr> <td>배분적 효율성 (pareto 효율)</td> <td>지역 주민의 선호를 반영한 각 지역별 최적 수준 공급</td> <td>A 지역 Q_A 보다 과다공급 : \alpha 후생손실 B 지역 Q_B 보다 과소공급 : \beta 후생손실</td> <td>효율적 배분</td> </tr> </tbody> </table>	공급주체 효율성	지방정부가 공급시		중앙정부가 공급시	A 지역	B 지역	공급수준	$MRT = \Sigma MRS_A$ Q_A 수준 공급	$MRT = \Sigma MRS_B$ Q_B 수준 공급	$MRT = \Sigma MRS_C$ 두 지역 모두 Q_C 수준 공급	배분적 효율성 (pareto 효율)	지역 주민의 선호를 반영한 각 지역별 최적 수준 공급	A 지역 Q_A 보다 과다공급 : \alpha 후생손실 B 지역 Q_B 보다 과소공급 : \beta 후생손실	효율적 배분
공급주체 효율성	지방정부가 공급시		중앙정부가 공급시												
	A 지역	B 지역													
공급수준	$MRT = \Sigma MRS_A$ Q_A 수준 공급	$MRT = \Sigma MRS_B$ Q_B 수준 공급	$MRT = \Sigma MRS_C$ 두 지역 모두 Q_C 수준 공급												
배분적 효율성 (pareto 효율)	지역 주민의 선호를 반영한 각 지역별 최적 수준 공급	A 지역 Q_A 보다 과다공급 : \alpha 후생손실 B 지역 Q_B 보다 과소공급 : \beta 후생손실	효율적 배분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계비용 동일성 전제의 한계 : 실제로는 공급비용의 차이가 존재함.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중앙정부가 생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 ② 고정비용을 고려 안 함 : 수많은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고정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③ 외부효과의 가능성성을 고려하지 못함. 														

8

주민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아른스타인(Arnstein)은 주민참여의 단계에서 권한 위임단계, 주민통제 단계만을 주민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 ② 주민감사청구는 상급기관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③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임을 사후적으로 표명하는 제도이다.
- ④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권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

2021년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 ① (x) 주민권력적 참여(citizen power) 단계 : ① 협동(partnership), ② 권한위양(delegated power), ③ 자주관리[시민통제] (citizen control)
 • 아伦斯泰因(S. Arnstein)의 제도적 참여 - 주민참여의 3가지 수준(degree), 8단계(level)

비참여단계 (nonparticipation)	① 조작(manipulation) ② 치료(therapy, 심리적 치유)	본래의 목적이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계도·치료하며, 참여를 조작하거나 흉내 내는 단계. 단순한 주민포섭
명목적 (형식적) 참여 (tokenism)	③ 정보제공(informing) ④ 상담[자문](consultation) ⑤ 회유[유화](placation)	주민들이 정보를 제공받아 권고·조언하고, 공청회·심의회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참여의 가능성은 있지만, 최종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형식적 참여에 그침.
주민권력적 참여 (citizen power)	⑥ 협동[대등협력](partnership) ⑦ 권한위양(delegated power) ⑧ 자주관리[시민통제](citizen control)	주민권력이 우월한 단계로, 주민들이 행정과의 협상과정을 통해 정책 결정·집행에 관여하고, 자치를 하는 단계. 주민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주민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책결정의 주도권을 획득.

- ② (x) 주민감사청구는 감독기관인 상급기관(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의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청구. 국민감사청구는 원칙적으로 감사원에 청구
 ③ (O)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직접 발의와 투표를 통해 대의제의 약점을 극복하는 직접민주제의 한 양식이다. 주민소환제는 공직선거를 통해 우선 구성된 자치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사후적으로 표명하는 제도이다. 대의제와의 관계를 3 단계로 나누어 보면, 제1단계에서 대의제의 공직선거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지방정부와 의회가 구성된다. 제2단계에서 대의제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불신임 등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주민소환제를 채용한다. 주민의 직접 청구와 투표의 절차를 거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해임한다. 제3단계는 해임 후 공석이 된 공직을 재선거를 통해 재충원함으로서 새로운 지방 정부와 의회를 구성한다. 다시 대의제를 채용하는 단계이다
 ④ (x) 주민투표법 상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고, 법정요건을 갖춰 주민이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한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답 ③

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
 ② 직장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③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해설

- ② (x) 직장단위 ⇒ 주거단위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의 편익증진,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
2.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4.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답 ②

10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20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③ 감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의 감사 결과 시정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해당 요구사항을 자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 ① (x) 시·도에서는 14일,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 범위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구 분	대 상	시기·요건	대상기관	주 체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 전반	매년 1회 정기적(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 (광역 14일, 기초 9일 범위)	상임위원회 소관의 전체 기관	본회의, 위원회(소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특정 사안 (구체적·한정적)	재적의원 1/3 이상 찬성으로 발의, 본회의 의결로 조사. 실시 시기 제한 없음	특정 사안 관련기관	

6

2021년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법>

•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자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답 ①

11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②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③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에 관한 사항

해설

현행 법률 상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은 지방자치법이 아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답 ④

12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감염병 예방 ② 주민등록 관리 ③ 지정항만 ④ 중소기업 육성① ② , ③③ , ④④ , ⑤

해설

④ (x)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5조 4호에 규정된 국가사무로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이다.

▣ 지방자치법 제13조 ②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예시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각 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	①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②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③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④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⑤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⑥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⑦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⑧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⑨ 공유재산관리 ⑩ 주민등록 관리 ⑪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①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②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③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④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⑥ 김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⑦ 묘지·회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⑧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⑨ 청소·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⑩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2021년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① 농업용수시설 설치·관리 ②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유통 지원 ③ 농업자재의 관리 ④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⑤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⑥ 농가 부업의 장려 ⑦ 공유림 관리 ⑧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⑨ 가축전염병 예방 ⑩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⑪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⑫ 중소기업의 육성 ⑬ 지역특화산업 개발과 육성·지원 ⑭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역개발사업 ②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③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④ 지방도(地方道)·시도·군도·구도 신설·개수·유지 ⑤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⑥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⑦ 자연보호활동	⑧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⑨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⑩ 소규모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⑪ 도립공원·광역사립공원·시립공원·군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⑫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흐름양식 설의 설치 및 관리	⑯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 ⑰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⑱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관리 ⑲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⑳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②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③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④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⑤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①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 포함)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②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①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②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답 ③

13

지방정치이론으로서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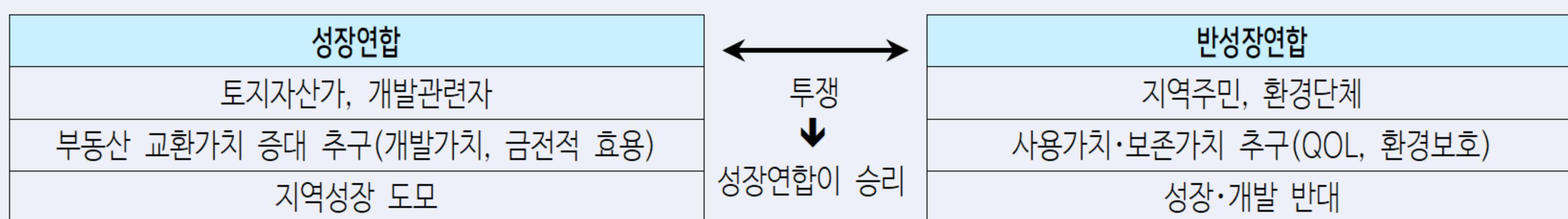
- ① 도시개발보다는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다.
- ② “누가 통치하는가” 보다는 “누가 도시의 물리적 구조 개편에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왜, 어떤 효과를 갖는가”가 연구과제이다.
- ③ 성장연합의 구성원은 지역에 근간을 둔 기업가와 임대수입자에 한정된다.
- ④ 성장연합 구성원은 토지의 교환가치보다는 이용가치를 더 중요시한다.

해설

- ① (x) 성장기구론은 엘리트론을 계승한 도시정치이론으로서 기업엘리트나 기업집단의 영향력을 강조하나 이를 지역 권력의 문제뿐 아니라 개발의 문제로 두어 좀 더 포괄적인 영역에서 문제를 전개해나가고 있다.
- ② (o), ③ (x) 로건(John R Logan) 몰로치(Halvey L Moloch)는 누가 통치하느냐 보다 누가 도시의 물리적 구조개편에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왜, 그리고 어떤 효과를 갖는가?라고 질문하며, 부동산 교환가치에 많은 관심을 가진 지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성장연합이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주도한다고 답한다. 지주(토지자산가)들은 기업가, 금융업자, 개발전문가(개발사업자), 자영업자를 참여시켜 성장연합을 구성하며, 이들은 정부를 움직여 도시성장에 기여하게 만든다는 입장이다.
- ④ (x) 성장연합은 토지의 이용가치보다 교환가치를 중시

▣ **로간과 몰로치(J. Logan & H. Molotch)의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 theory)·성장연합론(growth coalition theory)**

누가 통치하느냐보단 누가 도시의 물리적 구조개편에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왜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에 중점을 둠. 토지의 가치를 높이려는 토지자산가 (landlord)와 개발관련자(developer)들이 지역사회와 정치·경제를 주도한다는 이론(성장연합의 존재와 역할, 지역과 도시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성장연합의 활동을 중시). 토지와 부동산의 교환가치(개발가치, 금전적 효용)를 높이길 원하는 토지자산가, 개발사업자, 기업인, 자영업자,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성장연합은 지역의 성장을 도모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늘리려 한다. 반면 성장·개발에 반대하여 삶의 질과 환경, 사용가치(보존가치, 삶의 질,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지역주민, 환경운동집단 등으로 이루어진 반성장연합이 투쟁을 하지만 대체로 도시성장을 촉진하려는 성장연합이 우위를 점하게 된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자기 소유의 주택가격이 올라가길 원하면서 스스로 성장연합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성장기구론은 엘리트론을 계승한 도시정치이론으로서 기업엘리트나 기업집단의 영향력을 강조하나 이를 지역 권력의 문제뿐 아니라 개발의 문제로 두어 더 포괄적 영역에서 문제를 전개한다.



성장기구론	정치·행정엘리트 < 사회엘리트 + 경제엘리트
도시레짐이론	정치·행정엘리트 + 사회엘리트 + 경제엘리트

답 ②

8

2021년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14

<보기 1>의 재정지표와 <보기 2>의 설명을 옳게 짹지은 것은?

<보기 1>	<input type="checkbox"/> ㉠ 재정자주도 <input type="checkbox"/> ㉡ 재정력지수 <input type="checkbox"/> ㉢ 재정자립도
<보기 2>	<p>ⓐ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을 의미한다.</p> <p>ⓑ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 등을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으로 측정한다.</p> <p>ⓓ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p>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재정 자립도	총재원 중 자주재원의 비율 • 지방재정자립도(%) = $\frac{\text{자주재원}}{\text{총재원}} \times 100 = \frac{\text{자주재원}}{\text{자주재원} + \text{의존재원}} \times 100 = \frac{\text{지방세수입} + \text{세외수입}}{\text{세입총액}} \times 100$ • 지방채가 자주재원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으나 정부재정지표나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음. ① 정부재정지표 상 재정자립도(일반회계 기준) = $\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세외수입에서 지방채가 분리된 분류표에 근거한 것임 • 지방세 :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자치단체예산규모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보조금 + 지방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지방자치법시행령(제7조 2항 2호) 규정상 재정자립도(%) = $\frac{(\text{지방세수입} + \text{세외수입}) - \text{지방채}}{\text{일반회계예산}} \times 100$ 종래 세외수입에 지방채가 포함된 분류표에 근거한 것이며 도농통합 형태의 시 설치요건의 판단기준으로 사용됨.
	일반회계세입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일반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 • 지방재자주도(%) = $\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 + \text{지방교부세} + \text{조정교부금}}{\text{일반회계예산}} \times 10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 ◆ 정부재정지표 상 재정자주도(일반회계 기준) = $\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학문적으로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은 유사하게 쓰이나 정부재정지표에서는 개념을 구별 • 자치단체 예산규모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보조금 + 지방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재정 자주도	재정력 지수 = $\frac{\text{기준재정수입액}}{\text{기준재정수요액}}$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적 재정수요를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추정하는 지표.

답 ③

15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기업 대상사업(당연 적용사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input type="checkbox"/> ㉠ 공업용수도사업	<input type="checkbox"/> ㉡ 공원묘지사업	<input type="checkbox"/> ㉢ 자동차운송사업	<input type="checkbox"/> ㉣ 발전사업	<input type="checkbox"/> ㉤ 하수도사업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해설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 포함)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 · 토지 또는 공용 · 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사업범위)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t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t 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 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 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km 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 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t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m² 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m² 이상

②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수탁 대상 주택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원 · 녹지 · 주차장 · 어린이놀이터 · 노인정 · 관리시설 · 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2. 문화 · 체육 · 업무 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지방직영기업 대상사업



답 ②

16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구에 설치된 심의·의결기구이다.
- ② 분쟁 조정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심의·의결기구이다.
- ④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해설

- ① (x)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구(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시·도(광역자치단체)에 설치

• 지방자치법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의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 ① 제1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73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답 ①

17

세외수입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 노력에 따라 신장가능성이 크다.
- ㉡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
- ㉢ 지불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 ㉣ 분포 차원에서 지역별, 연도별 격차가 크다.
- ㉤ 수입원에 따라 세출용도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
- ㉥ 현금 외에도 수입증지와 같이 다른 징수형태를 가진다.

① ㉠, ㉢

② ㉠, ㉡, ㉢, ㉤

③ ㉢, ㉣, ㉤, ㉥

④ ㉠, ㉡, ㉣, ㉤, ㉥

해설

- ㉠ (x) 자주재원 : 지방정부의 독립적 노력과 절차에 의한 수입.

잠재수입원 :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한 잠재수입원임.

- ㉡ (x) 응익성(반대급부적 성격) : 경제활동이나 서비스 급부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수입.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와 달리 부담에 대한 저항이 비교적 적음.

㉢ 불규칙성[불안정성]·불균등성 : 지방정부 여건에 따라 지방 간 불균형적임. 회계연도별 불규칙성이 강함.

㉣ 비용 용도[비도(費途)]의 특정 : 일반재원도 있으나 수입원의 법적 근거에 따라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많음.

㉤ 다양성 : 종류와 수입근거(법률·대통령령·조례 등), 형태 등이 다양함. 현금 징수 외에도 수수료 등 수입증지로도 징수.

답 ④

10

2021년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18

제도적 보장설 관점에서 지방자치권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주권 아래의 권리이다.
 ②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③ 국법에 의하여 수여된 권리이다.
 ④ 국가의 성립 이전에 형성된 권리이다.

해설

④ (x) 제도적 보장설은 전래권설처럼 자치권이 국가의 통치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헌법에 지방자치 규정을 두어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된다는 주장이다. 자치권을 국가 성립 이전에 형성된 권리로 보는 것은 고유권설.

▣ 자치권의 본질

고유권설 (지방권설, 독립설, 확인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의 고유한 정치적 지배권을 향유한다고 보는 이론. • 프랑스 지방권사상(프랑스혁명 시기 뚤레[Thouret]의 주장)을 기초로 확립. • 자연법 사상과 역사적 연유관에 기반. - 자연법사상 : 사람이 천부의 기본권을 가진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도 고유한 지방권을 가지므로 국가권력으로 이 권리를 침범할 수 없음. - 역사적 유래관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성립 이전부터 형성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리를 인수한 것으로 봄.
전래권설 (국권설, 수탁설)	<p>단체자치와 관련. 자치권은 국권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봄(19C 후반 독일 공법학자들의 주장). 근대의 지방자치는 민족통일국가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법률의 창조물이며 고유사무가 설정되어도 국가 법률에 의해 수탁된 결과이고, 사무집행시 국가의 강력한 감독을 받음. 단, 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서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권리로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임.</p>
제도적 보장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래권설처럼 자치권이 국가의 통치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헌법에 지방자치 규정을 두어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된다는 주장(개별적인 지방정부의 존립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님). • 독일의 칼 슈미트(Carl Schmitt)에 의해 확립, 독일 바이마르 헌법을 중심으로 설명되며 오늘날의 다수설. • 지방자치를 헌법에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존폐는 오직 헌법 개정으로만 가능하고, 입법에 의해 변경할 수 없게 함. 지방자치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지만, 입법자가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지방자치 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에 대하여는 헌법적 보호가 부여됨(지방자치행정을 법률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 • 고유권설과 전래권설적 이해의 대립은 입헌주의가 확립되고 지방자치가 헌법에 규정되어 보장됨에 따라, 헌법상의 제도로서 보장되는 것이라고 설명되게 됨.

답 ④

19

<보기>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이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짹지은 것은?

- 지방의회는 (가)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나) 이상 또는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다)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라)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가)	(나)	(다)	(라)
①	재적의원 3분의 1	재적의원 4분의 1	출석의원 3분의 2	출석의원 4분의 1
②	재적의원 3분의 1	재적의원 5분의 1	출석의원 3분의 2	재적의원 4분의 1
③	재적의원 4분의 1	재적의원 5분의 1	재적의원 4분의 1	재적의원 4분의 1
④	재적의원 4분의 1	재적의원 4분의 1	재적의원 4분의 1	출석의원 4분의 1

해설

- (가) 제72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 (나)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 출제 당시는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는 규정이었지만 현재는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
- (다)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라)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답 없음

20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① 서울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2021년 현재 경기도의 부지사는 3명까지 둘 수 있다.
- ③ 서울특별시 중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다.
- ④ 세종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은 2명까지 둘 수 있다.

① ⑦, ⑨

② ⑦, ⑧, ⑩

③ ⑦, ⑨, ⑩

④ ⑦, ⑧, ⑨, ⑩

해설

① (O)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항 제1호

지방자치법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 1명으로 한다.

⑤ (O) 경기도 인구는 1,300만이 넘음. 인구 800만 이상의 도는 부시장을 3명까지 둘 수 있음.

⑥ (O) 지방자치법 제123조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⑦ (O) 서울특별시 외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부단체장을 2명까지 둘 수 있음.

▣ 부단체장 신분 및 선임방식(지방자치법 제123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1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자치단체		부단체장 정수	부단체장의 공직분류	
광역	특별시	3명	행정부시장(2인)	정무직 국가공무원
	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정무부시장(1인)	정무직 지방공무원
기초	시·군·자치구	2명(인구 800만 이상 광역시·도는 3명)	행정부시장·부지사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 가 등급)
	특별시(인구 100만 이상)		정무부시장·부지사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
		1명	일반직 지방공무원(직급은 인구규모에 따라 지방 서기관·부이사관·이사관)	
		2명	2명 중 1명은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	

■ 지방자치법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부단체장	수	공직분류	임명
특별시 부시장	3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함. 단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안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결격사유 없으면 30일 이내 임명절차 완료)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이 임명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부단체장	2명(인구 800만 이상 광역시·도는 3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1명	일반직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으로 한다.**■ 제42조(특별시의 보조기관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다.